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8. 12.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성차별적 문구를 제거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사용 범위를 종전과 같이 명확히 하고자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제3항제3호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를 삭제하지 않는다.

제42조제4항제3호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를 삭제하지 않는다.

제42조제4항제3호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8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8조(구성) 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8조(구성) 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삭 제></p>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9.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활동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p><삭 제></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p>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④ 심의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④ 심의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④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삭 제></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